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협의 간주처리 통보됨에 따라 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거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조례 제634호(2002.8.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은 2003년 8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현원 14명은 2003년 2월 28일”을 “현원 4명은 2003년 8월 31일”로 부칙 개정)

3. 검토의견

이번 안은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조례 제634호) 부칙 제3조제2항의 초과현원 “14명”을 “4명”으로 하고, 이들 4명에 대한 존치기한을 2003년 8월 31일로 연장하여 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18회 임시회(2002. 7)에서는 정원 외 14명을 2003년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들 중 9명은 그동안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직렬간 조정으로 정원의 총수에 흡수되었고 1명은 퇴직하여, 4명(운전원)만이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는 이들 현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제1655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범위 안에서 이들의 기한을 2003년 8월 31일까지 연장하자는 협의가 있었고,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부합현원 기한연장 협의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하여 정원이 증원된 경우에는 직종·직급별 불부합 상태를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부합 현원수 만큼 결원을 유지하고 직종·직급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2003년 8월 31일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령 제16550호 부칙 제3조 (초과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지방자치단체의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2610>